

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
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7월 2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1. 제 목 :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
2. 적용기간 : 2015년 7월 2일 ~ 재공고 시 까지

3.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

- 사용 금지 자격 명칭(용어) :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
 - 국어기본법 제19조(국어의 보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(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)에 따른 **한국어교원**
 - 도서관법 제6조(사서 등)에 따른 **사서**
 -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(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)에 따른 **학예사**
 - 공연법 제14조(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)에 따른 **무대예술(무대기계·무대 조명·무대음향)전문인**
 -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(문화예술교육사)에 따른 **문화예술교육사**
 - 관광진흥법 제13조(국외여행 인솔자), 제38조(관광종사원의 자격 등), 제48조의 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) 등에 규정된 **국외여행인솔자, 관광통역안내사, 국내여행안내사, 호텔경영사, 호텔관리사, 호텔서비스사, 문화관광해설사**
 - 경륜경정법 제7조(선수·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)에 따라 **선수, 심판**

○ 현행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(정의)에 따른 체육지도자(스포츠지도사, 건강운동관리사, 장애인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)

-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이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(정의)에 따른 체육지도자 (경기지도자, 생활체육지도자)

□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

○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‘국외여행인솔자·관광통역안내사·국내여행안내사·호텔경영사·호텔관리사·호텔서비스사·문화관광해설사’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

※ 관광숙박업 객실관리, 객실식당의接客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호텔경영사·호텔관리사·호텔서비스사 직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

(예) 객실서비스기능자격증, 룸메이드, 호텔리어 등

※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

(예) 청소년문화관광해설사, 백제문화해설사, 문화재해설사, 문화유산체험해설사, 문화관광해설전문가 등

○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‘체육지도자’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

※ “대상별 스포츠(체육·운동)지도사 또는 지도자”, “건강운동(체육)지도사 또는 지도자”와 같이 그 직무가 국가자격과 중복되어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

(예) 유아체육지도사(자), 유아스포츠지도사, 어린이스포츠지도사(자), 유소년스포츠지도사, 생활체육지도사, 생활스포츠지도사, 전문체육지도사(자), 전문스포츠지도사, 노인체육지도사(자), 노인스포츠지도사, 건강운동지도사(자), 건강운동사, 장애인체육지도사(자),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

□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

□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